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20호

2023. 10. 20.(금)



목 차

◆ 정 정

제163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	2
---	---

정 정

◆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63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서울시보 제3862호(2023. 3. 30.)에 게재된 ‘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’ 중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발령안을 정정합니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인

2023년 10월 20일

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63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‘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. 제안이유

- 2023년 1월 16일 「서울특별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, 이와 관련하여 부서 명칭이 ‘예산정책담당관’에서 ‘재정분석담당관’으로 변경되어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반영하고자 함

제3조(하부조직)

-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장 밑에 의정담당관·언론홍보실장·의사담당관·법제담당관·재정분석담당관·정책지원담당관·인사담당관을 두며, 언론홍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(개정 2023.1.16.)

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규정 내용에 ‘예산정책담당관’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‘재정분석담당관’으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63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예산정책담당관」”을 “「재정분석담당관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예산정책담당관」”을 “「재정분석담당관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예산정책담당관」”을 “「재정분석담당관」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예산정책담당관」”을 “「재정분석담당관」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예산정책담당관」”을 “「재정분석담당관」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예산정책담당관」”을 “「재정분석담당관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예산정책담당관」”을 “「재정분석담당관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(이하 “예산정책담당관”이라 한다)이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·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(이하 “의안비용추계”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(이하 “재정분석담당관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비용추계 요청 등)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정책담당관에 의안비용추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----- -----.	제2조(비용추계 요청 등) ① ---- ---- ---- 재정분석담당관에 ----- ----- -----.
제4조(비용추계 내용 협의) 예산정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요청자 또는 의뢰자와 비용추계 내용에 대해 설명,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.	제4조(비용추계 내용 협의) 재정분석담당관은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관련자료 요청) <u>예산정책담당관</u> 은 의안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 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	제6조(관련자료 요청) <u>재정분석담당관</u> 은 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비용추계결과 송부 등) ① <u>예산정책담당</u> <u>관</u> 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결재 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----- -----.	제7조(비용추계결과 송부 등) ① <u>재정분석담당</u> <u>관</u> 은 ----- ----- ----- -----.
제9조(회신 등의 공개) <u>예산정책담당관</u> 은 비 용추계 결과를 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.	제9조(회신 등의 공개) <u>재정분석담당관</u> 은 -- ----- -----.
제10조(자료의 관리) <u>예산정책담당관</u> 은 의안 비용추계 요구사항과 회신에 관한 사항을 의 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기록·유지하여 야 한다.	제10조(자료의 관리) <u>재정분석담당관</u> 은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